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4,407,665	20,832,230
일반회계	591,448,206	17,743,446
특별회계	102,959,459	3,088,784
공기업특별회계	78,445,861	2,353,3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091,410	992,7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354,451	1,360,634
기타특별회계	24,513,598	735,4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61,283	34,8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54,552	28,637
주차장특별회계	6,476,344	194,290
수질개선특별회계	15,921,419	477,64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55,16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세),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